

(뒤 쪽)

유의사항	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7조 및 시행령 제2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「소득세법」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	
작성방법	① 부동산 소재지는 동·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적습니다. ② 매수인, 매도인 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, 신고인란에는 거래당사자간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, 중개거래한 경우는 중개업자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. ③ 변경하려는 각 항목 앞의 □에 √표시를 하고, 변경 전·후의 내용을 적습니다. ④ 거래지분란의 괄호 안에는 거래지분이 변경되는 자의 성명을 표기합니다. ⑤ 매수인 변경란에는 계약의 해제 등을 한 매수인의 성명과 계약을 이행하는 다른 매수인의 거래지분 변경 내용을 명시합니다. ⑥ 거래물건 변경란에는 계약의 해제 등을 한 물건의 지번 등 내역을 명시합니다. ※ 중개업자가 다수이거나 변경 항목 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(간인 처리)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.	수수료
		없 음

※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